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제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당해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 기관 (담당 부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